

「구미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장미경 의원 외 15인

2. 제안이유

- 마을 공동체 활동의 거점 공간인 마을회관의 지원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활용성을 높여 지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마을회관의 신축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거나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규정(안 제3조)
- 토지 및 건축물을 구미시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와 구미시 소유 마을회관의 신축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규정(안 제4조)
- 긴급 또는 노후가 심한 2천만원 이하의 경미한 보수 등은 시설비 예산범위 안에서 시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규정(안 제5조)
- 준용(안 제12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
- 「지방재정법」 제3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마을회관의 신축 및 보수에 대한 비용지원과 구미시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총 사업비 2천만원 이하의 긴급 또는 노후가 심한 보수 사항과 구미시 소유 또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은 경우 시장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마을회관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, 공동체 거점 공간의 체계적인 관리로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- 다만, 구미시 관내 마을회관은 75개소로, 이 중 사용검사 후 30년 이상 경과된 마을회관은 29개소로 집계되는 바, 재정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운영을 위해 집행부서에서는 신축 등에 대한 자체 방안 마련 및 기준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※ 별표 - 참고자료(2023. 12. 기준)

○ 구미시 마을회관 현황

- 마을회관 : 읍·면·동지역 행정리·통 단위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 장소로 사용하는 건축물
- 마을회관으로 별도 관리 및 지원체계 정비 대상 75개소
- 사용검사 후 30년 이상 경과된 마을회관 29개소

○ 읍·면·동 별 현황

(단위 : 개소)

계	선산읍	고아읍	산동읍	무을면	옥성면	도개면	해평면	장천면	광평동	인동동
75	22	15	3	10	9	5	5	3	1	2

* 출처: 구미시청 공공시설과